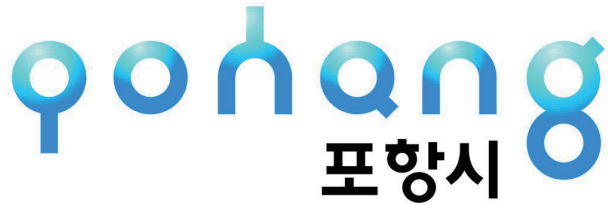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포항시보

제1123호 2016. 12. 6(화)

◀ 입법예고 ▶

-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제2016-97호) 2
- 포항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제2016-98호) 9

◀ 고 시 ▶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제2016-149호) 16

◀ 공 고 ▶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건설교통사업본부 제 2016 - 161호)19

회								
람								

입 법 예 고

포항시 공고 제2016 - 97호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오염지역 낚시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낚시통제구역을 지정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낚시통제구역에 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 나.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변경(안 제3조 ~ 제4조)
 -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변경 시 시보에 공고
- 다. 낚시통제구역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안 제5조 ~ 제9조)
- 라. 과태료 부과 및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안 제10조 ~ 제11조)

3. 관련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6. 12. 1. ~ 2016. 12. 20.(20일간)

6. 의견제출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수산진흥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수산진흥과(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우 37683)
전화 054)270-2743, FAX 054)270-2740,E-mail pohang1004@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오염지역 낚시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변경 등) 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의 절차 등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낙시통제구역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낙시통제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낙시통제구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낙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낙시통제구역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수산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항시의회 의원 2명
2.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학계의 전문가 4명
3. 수면관리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3명
4. 안전관리 기관에 소속된 사람 2명
5. 어업인 대표 2명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11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공고 제2016-98호

공 고

「포항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12. 2.

포 항 시 장

포항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포항시 포상 조례」의 개정에 따라 그 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포항시 공무원 대상 운영 규칙」과 「포항시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규칙」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포상에 따른 행정의 효율화 및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포상에 관한 사무의 주관부서 규정(안 제2조)
- 나. 으뜸공무원상 분야별 부문과 부상, 인사상 특전부여를 명확히 규정(안 제3조)
- 다.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기준일 및 모범공무원 증서를 규정(안 제4조)

3. 관련법령

- 「포항시 포상 조례」
- 「모범공무원 규정」
- 「지방공무원법」

4. 규칙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16. 12. 2. ~ 2016. 12. 22.(21일간)

6.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2. 22.(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자치행정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2085, FAX 054)270-2070, E-mail houk123@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포항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포항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자치행정과의 협조를 받아 본부·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으뜸공무원상) ① 「포항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으뜸공무원상은 분야별로 선발하여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으뜸공무원상의 분야별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공공행정 분야
2. 문화 및 관광분야
3. 복지, 환경, 보건 분야
4. 농림, 해양수산 분야
5. 산업, 중소기업, 과학기술 분야
6.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③ 분야별 수상자는 별표에 따른 부상을 수여하며 부상은 기념메달 금 7.5그램으로 한다.

④ 으뜸공무원상을 수상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별표 4의 범위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
3. 구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청 결원 시 우선 전입
4. 기관 내 본인 희망부서 우선 전보

제4조(모범공무원 수당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을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때
4. 포항시 외의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되었을 때

②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하며,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포항시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및 「포항시 공무원 대상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별표】

메 달 규 격

<앞면>

으뜸공무원
○○ 분야
성 명 ○○○

2.4 센티미터 메달앞면
 시마크음각

<뒷면>

수상일 : 년 월 일
포항시장 ○ ○ ○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모범 공무원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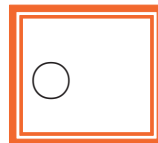
소 속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귀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0000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포항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 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장



205mm×292mm(한지 170g/㎡)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6-149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포 항 시 장

- 1. 사업시행지 : 포항시 북구 송라면 상송리, 중산리 일원 (변경없음)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체육시설
 - 명 칭 : 포항 컨트리클럽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산48번지 (주)홍익레저산업 대표이사 이병진
- 4. 사업계획 내용
 - 부지면적
 - 당 초 : 1,008,872㎡(대중 18홀)
 - 변 경 : 986,443㎡(대중 18홀)
 - 건축면적 : 5,282.16㎡ (연면적 9,403.64㎡)
 - 사업기간
 - 당 초 : 2003.12.26 ~ 2016.12.25
 - 변 경 : 2003.12.26 ~ 2017.12.25
- 5.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6항 관련)

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조서

○ 공공·문화체육시설

- 체육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체육 시설	골프 장	포항시 북구 송라면 상송·중산리 일원	1,023,746	감22,429	1,001,317	포항시 고시 제2006-275호 (2006. 4. 3)	면 적 정 정

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도 : 별첨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7.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 관계 편입토지조서, 도면 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054-270-35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포항시 북구 송라면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권리 구분	관계인 주소	비고
				공부	편입				
1	상송리	203	답	218	225.7	김상수 창원시 성산구 외리로34번길 13, 105동 801호			
2	상송리	204	답	311	315.7	김상수 창원시 성산구 외리로34번길 13, 105동 801호			
3	상송리	산23	임	24,595	24,488.5	㈜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4	상송리	산27	임	17,455	16,467.1	㈜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5	상송리	산28	묘	4,205	3,773.1	㈜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6	상송리	산37-1	임	19,835	19,713.1	㈜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7	상송리	산37-2	임	5,554	5,458.4	㈜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8	상송리	산38	임	3,174	2,579.5	㈜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9	상송리	산39-1	임	343,140	332,238.2	㈜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10	상송리	산39-2	임	11,901	12,097.8	㈜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11	상송리	산43-2	임	30,634	30,682.8	㈜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12	상송리	산44	임	87,273	88,460.0	㈜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13	상송리	산45-1	임	298	374.4	㈜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14	상송리	산46	임	3,570	4,225.4	㈜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15	상송리	산47	임	4,364	4,303.8	㈜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16	상송리	산48	임	196,760	194,370.8	㈜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17	상송리	산61-1	임	8,265	8,767.9	㈜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18	상송리	산62-1	구	973	973	국도교통부			
19	중산리	산26	임	41,256	40,797.7	㈜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20	중산리	산28-1	임	40,463	37,327.0	㈜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21	중산리	산29	임	114,248	108,125.3	㈜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22	중산리	산30	임	50,380	50,677.8	㈜홍익레저산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751길 126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구은행	
합 계				1,008,872	986,443				

※ 편입면적은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확정 현황측량 성과에 따른 구적 면적임

공 고

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 공고 제 2016 - 161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우리시 관내 노상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16. 11. 29.


포 항 시 장

- 1. 공 고 기 간 : 2016. 11. 29. ~ 2016. 12. 29. (30일간)
 - 2. 폐 차 장 소 : 포항시 관내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체
 - 3. 폐차 예정일 : 2016. 12. 30. 부터
 - 4. 대 상 차 량 : 36저5832 외 8대
 -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가.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 21조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20~30만원, 불응한 경우 100~150만원)
 - 나.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자동차 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다. 공고기간 내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6. 기 타 사 항
 -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본 공고문으로 갈음합니다.
 - 나.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차량 소유자 (점유자)에게 있습니다.
 - 7. 문 의 처 : 포항시청 교통지원과 자동차관리팀 ☎(054)270-3643
- 붙 임 : 1. 강제처리 대상 1부.
2. 압류 및 저당내역 1부. 끝.

강제처리 대상

관리 번호	자 동 차 등록번호	차 명	소유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비 고
2016-216	36저5832	토스카2.0	소*민	850301-****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합박로	
2016-220	65구6476	마티즈	윤*석	700329-**** ***	경북 칠곡군 약목면	
2016-229	95루5255	이스타나	최*석	611202-**** ***	경북 울진군 근남면 울진북로	
2016-217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2016-21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2016-221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2016-222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2016-225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강제처리 대상

관리 번호	자 동 차 등록번호	차 명	소유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비 고
2016-227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이	하	여	백	

압류 및 저당내역

번호	차량번호	차명	소유자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상주소	구분	축적기관	압류(저당)번호
1	36저5832	토스카 2.0 DOHC	소*민	850301-*****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로67번길 8-2, 403호(연수동)	압류1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 사	징수부-995(12.2.21.)호
						압류2	대전광역시 대덕구	세무팀-3939
						압류3	대전대덕구청	교통팀-24043
						압류4	대전대덕구청	교통팀-24043
						압류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북건교-6375
						압류6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 1944(2014.10.23)
						압류7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등-3283
						압류8	대전 대덕구청	교통과-49238
						압류9	대전 대덕구청	교통과-49238
						압류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무과-4913
						저당1	이주캐피탈㈜	4105-2011-012548
2	65구6476	마티즈 (MATIZ)	윤*석	700329-*****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952번지 65/삼주강민타운 105동 1202호	압류1	칠곡군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7870/11004479
						압류2	칠곡군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7870/11004480

										입류3	칠곡군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13707/11000651
										입류4	칠곡경찰서	2013D1912000756
										입류5	경상북도 칠곡군	세무과-14401
										입류6	칠곡군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7383
										저당1	우리파이낸셜㈜	4713-2009-004515
3	95투5255	이스타나-굿 벤	최*석	611202-*****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울진북로 141-1					입류1	경주시장	교행91123-1266
										입류2	울진군	경제교통과-9964
										입류3	경상북도 울진군 환경위생과	환경-18945호(2014.06.09)
										입류4	경상북도 울진군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9075
										입류5	경상북도 울진군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9768
										입류6	경상북도 울진군	재무과-13371
										입류7	울진군	경제과-6343
										입류8	경상북도 울진군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41921(12.21)
										입류9	울진군	경제과-48035
										입류10	울진군	경제과-48035
										입류11	경상북도 울진군 환경위생과	환-위-21337(2016.7.1)